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
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,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(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)

- 1)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·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2)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

나.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(안 제3조 제4항 개정)

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퇴직 후 해당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감사기관으로부터 위법·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
2.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
3. 검사가 혐의없음, 죄가안됨,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
4. 법원의 무죄, 면소,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명예퇴직수당 신청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·제8조에 따름
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		③ 공무원 구분 [] 일반직() [] 특정직()	④ 직급·계급·직무군 (호봉)
	② 전(前) 소속			
	⑤ 성명	한글	⑥ 생년월일	
		한자	⑦ 주소	□□□-□□□
	⑧ 전화번호(주택)		⑨ 근속기간	년 월
⑪ 비위·형벌 사실 [] 있음 [] 없음 (면직일: . . . , 불송치 등 처분일: . . .)	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) 형량:) [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(선고일: , 선고형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(확정일:) 형량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(선고일: , 선고형:)		

소속 기관 기재란	⑫ 정년 구분	[] 연령정년 [] 계급정년		⑬ 정년			세(년)	
	⑭ 경력직 퇴직 또는 임기제 경과기간	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		[] 임기제 [] 별정직		년 월	확인	인사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
	⑮ 정년잔여기간 (수당지급대상기간)	년 개월 (년 개월)		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				
	⑰ 비위·형벌 사실 확인	[] 있음 [] 없음	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 형량:) []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 []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형량:) []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, 선고형:)				
		확인	인사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		연금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		감사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	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명예퇴직원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. 다만,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3조제5항에 따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3. 경력증명서 1부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3조제5항에 따라 재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-----	--

이
의
도

소속기관의 장

직인

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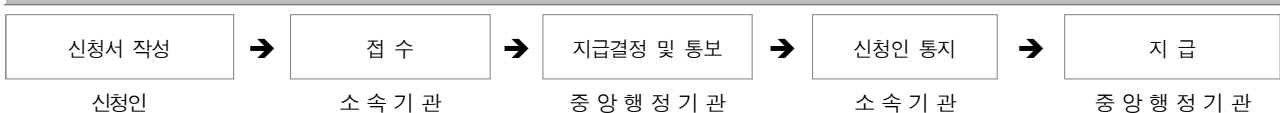
– 5 –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작성방법

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2. ③란은 해당란([])에 “√”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검사, 외무·경찰·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)에 적습니다.
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“√”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3조제5항에 따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을 적습니다.
6. ⑫ ~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, 인사·연금·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).
7. ⑫란은 해당란에 “√”표시를 합니다.
8.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“세” 또는 “년”으로 적습니다.
9.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10.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(“√” 표시).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 ①·② (생략)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. 1. (생략) 2. <u>정년이 연장된 공무원: 연장전의 정년퇴직일</u>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</u>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⑤ <u>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퇴직 후 해당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</u>

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감사기관으로부터 위법·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

2.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한 경우

3. 검사가 혐의없음, 죄가안됨,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

4. 법원의 무죄, 면소,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9